



보도자료



보도일시	2021. 9. 28.(화) 정오 12:00 이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			총 5쪽 (붙임 2쪽 포함)
배포일시	2021. 9. 28.(화)			
담당부서	여성가족부	아동청소년성보호과	박선옥 과 장(02-2100-6401) 김은실 사무관(02-2100-6404)	
	법무부	전자감독과	심선옥 과 장(02-2110-3843) 박지훈 주무관(02-2110-3796)	
	경찰청	여성청소년수사과	김종민 과 장(02-3150-2049) 이기범 경 정(02-3150-2548)	

실거주지 등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의 정확성 높인다

-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의 지도를 현행화 주기가 빠른 민간업체 지도로 변경
- 신상정보 공개대상자가 전자감독대상일 경우 주거지 변동 즉시 반영
- 고위험군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에 대한 상·하반기 일제점검 실시, 신상정보 변경 신고 의무를 위반한 대상자 엄벌 조치

□ 여성가족부(장관 정영애)와 법무부(장관 박범계), 경찰청(청장 김창룡)은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‘성범죄자 신상정보 유관기관 실무협의회’를 개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.

○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·공개·고지업무는 3개 부처(청)가 업무를 분담*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, 각 부처(청)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.

* 경찰청(등록정보 확인·점검)⇒법무부(신상정보 등록·관리)⇒여가부(신상정보 공개·고지)

□ 이번 실무협의회에서는 성범죄자 알림e웹사이트(www.sexoffender.go.kr)와 앱을 통해 공개·고지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8개 항목* 중 정확한 ‘실제 거주지’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.

- * ① 성명 ② 나이 ③ 주소(실제거주지) ④ 신체정보(키,몸무게) ⑤ 사진 ⑥ 성범죄 요지 ⑦ 성범죄 전과사실 ⑧ 전자장치 부착 여부



- 그동안 신상정보 공개 대상 성범죄자가 주소신고 시 실제 거주지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, 경찰의 점검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등 정보 관리의 사각지대가 있었다.
-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의 사진정보 현행화 여부를 항시 파악하여 즉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,
 - 성범죄자의 위치 표출 정확성이 제고되도록 민간지도를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성범죄자 주거지 위치정보 서비스에 활용할 예정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올해 11월 경 시범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.
 - 또한, 성범죄자의 실거주지 정보가 잘못 공개·고지된 경우 누구나 정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'고지정보 정정 청구' 제도를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등 제도 운영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.
- 법무부는 신상정보가 공개된 전자감독 대상자를 상시 관리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주거지 변경을 인지한 경우 직접 즉시 반영하고, 이를 경찰과 여성가족부에 통보하는 것으로 처리절차를 개선하기로 하였다.
 - 그동안은 인지한 주소정보는 경찰에 먼저 통보하여 현장확인을 마친 후 반영해왔으나, 앞으로는 위치정보 기반으로 정확하게 관리되고 있는 전자감독대상자의 주거지는 법무부가 인지한 정보를 신속하게 반영하기로 협의하였다.
 - 이와 함께, 성범죄자 신상정보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경찰이 법무부에 보내던 정보전달 방식도 개선할 예정이다.
- 현행법은 경찰이 성범죄자 신상정보 변경신청서 접수 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도록 하고 있으나, 현재 국회 심의 중인 「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」이 통과되고, 이에 따른 형사사법정보 시스템을 개편하여 경찰이 수집한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신속하게 시스템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.



□ 경찰청은 법무부로부터 통보 받은 즉시 대상자 직접 대면 등으로 변경 여부를 확인해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대상자는 엄벌*하는 한편, 확인결과를 법무부와 여가부에도 즉시 통보해 공개 신상정보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.

*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(성폭력처벌법 제50조 제3항)

○ 아울러, 공개·고지 대상자 등 고위험군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대해서는 상·하반기 일제 점검 등으로 신상정보 변경여부 확인 등 관리를 지속 강화할 예정이다.

□ 이번 논의 결과로 향후 전자감독 대상 성범죄자의 실거주 정보의 현행화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며, 정확성 또한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.

- 【붙임】 1. 성범죄자 신상정보 유관기관 실무협의회 개최 개요 1부.
2. 성범죄자 신상정보 운영체계 1부.
3. 고지정보 정정 청구 제도 안내 1부.

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저작물은 "공공누리 제1유형(출처표시)"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붙임1

성범죄자 신상정보 유관기관 실무협의회 개최 개요

□ 회의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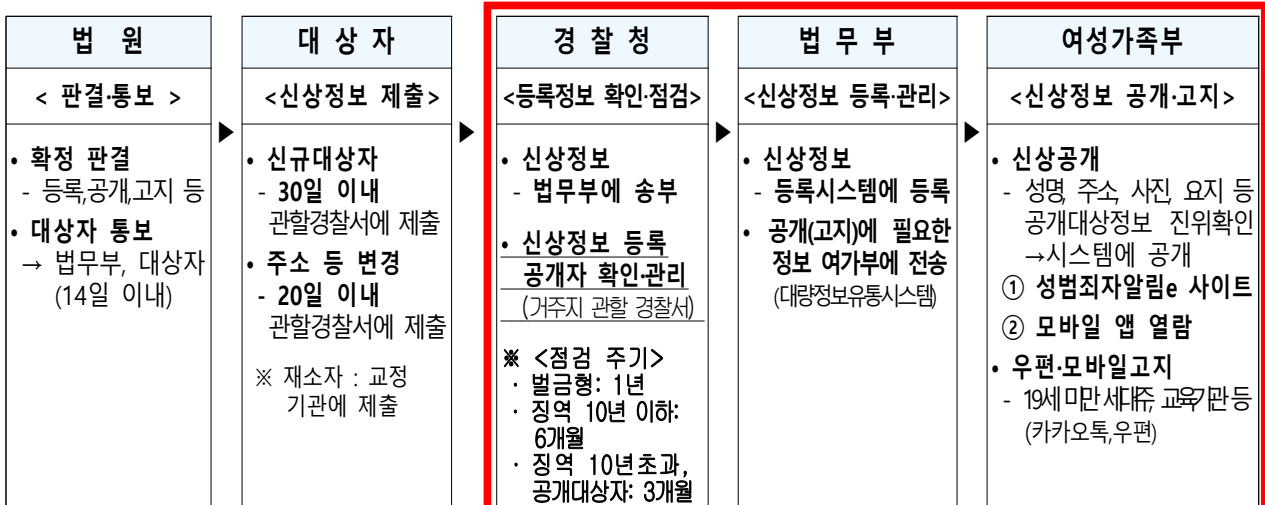
- 일 시 : 2021. 9.28.(화) 10:30~12:00
- 장 소 : 정부서울청사 13층 회의실(1315호)
- 참석대상 : 약 10명
 - 여성가족부, 법무부, 경찰청 신상정보 담당 소관 과장 및 업무 담당자
- 주요내용
 -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자료의 정확성 제고 방안 논의
 - 기관별 협조 요청사항 등 개별 안건 논의 등

□ 시간계획(안)

시 간	소요시간	내 용	비 고
10:30~10:35	5분	· 참석자 소개	사 회 자
10:35~10:45	10분	· 인사말씀	여성가족부 (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)
10:45~11:55	70분	· 각 기관별 신상정보 공개자료 정확성 제고 방안 발표 및 논의 · 각 기관별 협조 요청사항 등 개별 안건 논의	여성가족부 법 무 부 경 찰 청
11:55~12:00	5분	마무리 말씀	여성가족부 (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)

붙임2

성범죄자 신상정보 운영 체계





잘못된 성범죄자 신상정보, 국민 누구나 정정 요청할 수 있습니다!

고지정보 정정 청구 제도



성범죄자 알림e·모바일·우편으로 공개·고지하는 성범죄자의 실거주지 정보가 잘못 공개·고지된 경우 누구나 정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

고지정보 정정 청구 방법

1



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고지정보 정정 청구

성범죄자 알림e 접속 ▶ 성범죄자 찾아보기 ▶ 공개 및 고지 정보의 정정 ▶ 정정 신청

2



유관기관 확인 요청(여성가족부 → 법무부 → 경찰청)

7일 이내 정정 청구사항 공유 및 진위여부 확인 요청

3



유관기관 확인 결과 수신

정보의 진위여부 확인 후 공개고지정보 오류가 있을 경우, 정정된 신상정보도 함께 전송

4



정정 청구 신청결과 알림

성범죄자 알림e 접속 ▶ 성범죄자 찾아보기 ▶ 공개 및 고지 정보의 정정 ▶ 정정 신청 처리 결과 확인

5



정정 청구 결과 반영

공개고지정보의 오류가 확인된 경우 성범죄자 알림e 정보 수정 및 정정고지서 발송